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9, Vol. 38, No. 3, 347-376

<http://dx.doi.org/10.22257/kjp.2019.09.38.3.347>

##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허영록

이수정†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현장은 대부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범죄 관점 보다는 자연스러운 사망 현장으로 바라보기 쉽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범죄임으로 타 살인범죄와 달리 범죄현장 보다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 보호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배우자 보험살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에 근거하여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에게 적합한 유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 범행특성과 범죄자 유형의 변화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2017년 한국에서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로 적발된 51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자료, 형사판결문 등을 수집하여 108개 특성변인에 대한 동질성분석(HOMALS)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는 외도형, 포식형, 빈곤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외도형 범죄자는 주로 내연관계 공범과 함께 범행 후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포식형 범죄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물색 후 위장혼인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고 독극물로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빈곤형 범죄자는 주로 생계형 궁핍에 좌절을 느껴 배우자와 자녀들을 연속살인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범죄자 유형 중 외도형 범죄자는 감소한 반면, 포식형 범죄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이 관찰되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포식형 범죄자의 위험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포식형 범죄자는 사냥하듯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위장 혼인관계를 맺은 후 보험금과 재산을 함께 노리고 살해하는 특성이 관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식형 범죄자에 대한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범죄 프로파일링, 유형분류, 동질성분석(HOMALS)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18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한 것임.

†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Tel: 031-249-9198, E-mail: [suejung@kyonggi.ac.kr](mailto:suejung@kyonggi.ac.kr)

배우자 보험살인 범주는 사망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피보험자인 배우자를 살해하는 범죄이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의 발생빈도는 극히 낮으나 보험범죄가 가장 흉포화 되어 나타나는 범죄유형이며, 그 피해를 영구히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보험살인 범주는 보험가입 특성상 대부분 가족관계자 간 발생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 보험살인 범죄 중 54% 이상의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배우자에 의한 보험살인 범죄이다(이병희, 2001; 渡橋健, 2009). 보험제도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경제활동의 안전성을 확보 해주는 훌륭한 순기능적 제도이지만, 누군가의 범죄행위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보험제도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가 살인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강력한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 초래되는 피해가 영원히 원상회복 될 수 없을 뿐더러 살인으로 인한 피해가족이 겪을 갖가지 피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이수정, 2018).

일반적인 살인범죄에 있어서는 대부분 범죄 현장에서 관찰한 범행특성을 토대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나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현장은 대부분 우연한 사고로 위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인범죄 관점보다는 자연스러운 사망현장으로 바라보기 쉽고, 위장된 범죄 현장에서 살인범죄의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범죄현장에서 관찰한 범행특성 보다는 보험가입 내용, 가해자 피해자의 재무상태, 외도 등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

사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Douglas, Burgess, & Ressler, 2013). 언론보도(KBS, 2016)에서 나타나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사례를 보면, 살인범죄 현장의 현행범도 아니고, 목격자도 없으며, 대부분 CCTV가 없는 은밀한 곳에서 범해지기 때문에 장기 미제사건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따라서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험가입내역이 확인되고 범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여러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부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범행동기 및 범행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발생원인에 대한 관점은 경제적 궁핍을 원인으로 한 사망보험금 편취 목적 때문이라는 가정에 머물러 있었다(이병희, 2001; 장인권, 2010; 송윤아, 2011; 윤광균, 2012). 그러나 사망보험금 편취 목적만을 사유로 배우자 살인을 결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보험살인을 결행하게 하는 특수한 동기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을 탐색하고, 이성간 발생하는 범죄특성상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의 범행 차이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범행특성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파악된 연후에 범죄 유형을 탐색하여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를 유발하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범행특성과 범죄자 유형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다빈도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유형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성적 목적의 살인(박지선, 2010), 방화범죄(김경옥, 이수정, 2009), 연쇄살인(김경옥, 이수정, 2009), 묻지마 살인(박지선, 최낙범, 2013)

등 타 살인범죄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이 활용되어 범죄자 검거 및 예방대책 수립에 기여해 왔다. 보험살인 범죄는 범죄현장 정보에 의존하는 타 살인범죄와 달리, 변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험가입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하면 예방 및 적발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범죄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살인 범죄는 타 살인범죄에 비해 기초연구 및 범죄데이터의 축적이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보험살인 범죄는 형법상 살인죄에 속할 뿐이므로 보험살인 범죄만을 별도로 분석하여 예방대책에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보험살인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병희(2001)의 ‘보험금 편취목적 살인범죄의 실태’가 있고, 장인권(2010)의 ‘보험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보험살인 범죄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형사판결문에 기초한 빈도분석 위주로 기술되어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보험살인 범죄사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외국의 여러 연구자(渡橋健, 2009; Havenga, 2006; Adjin-Tettey, 2014; Chriscoe, 2016; Dalek, 2017)들은 주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송윤아(2011), 윤광균(2012)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주로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외국의 연구는 피보험이익이 있는 친밀한 관계가 더욱 위협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방안을 찾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의 착수일 현재까지 보험살인 범죄

와 관련한 유형분류 및 유형별 특성 등에 대해 시도된 연구는 국내·외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험제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보험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일사례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체계적인 유형분류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빈약한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에 대해 실효적 억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한 범죄자 유형분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살인, 방화 등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활용의 중요성은 범죄학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허경미, 2008). 그러나 프로파일링 기법이 범죄 현장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머물고 있음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정보 등과 연계시킨 유형화 연구가 진정한 의미의 프로파일링 기법 활용이라는 주장이 있다(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프로파일링을 위한 탐색적 실증 연구로서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의 유형분류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러한 시도는 학술적으로나 범죄예방 및 적발현장의 실무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를 유발하는 매개변인을 파악함으로써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피해자 보호체계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험살인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변사사건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에 초동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보험살인 범죄의 개념 및 특징

보험살인 범죄는 사망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타인을 살해 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위장하거나, 사망이 예견되는 피보험자를 고의로 방치하여 사망케 한 후 우연한 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자연스러운 사망으로 위장하는 보험범죄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허영록, 2018). 보험살인 범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외국 연구의 경우, 일본의 학자들은 ‘보험금살인’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渡橋健, 2009; 越智啓太와 木戸麻由美, 2011). 서구의 학자 Chriscoe(2016)는 ‘Murder for Life Insurance Money’ 라고 표현하면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Havenga(2006)는 ‘Murder for insurance’ 라는 ‘보험살인’과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내 학자들의 용어 사용을 살펴보면, 이병희(2001)는 ‘보험금살인’과 ‘보험살인’을 혼용해서 사용하였고, 장인권(2010), 윤광균(2012)은 ‘보험살인’을 고유 명사화하여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한국과 미국 등 서구의 학자들은 ‘보험살인’ 또는 ‘보험금살인’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학자들은 ‘보험금살인’이라는 용어를 고유 명사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국 보험살인이나 보험금살인의 의미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혼용되어 사용한다고 하여도 용어의 혼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살인 범죄의 대상이 되는 보험 상품은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기본형에 각종 특약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므로 순수

한 의미의 보장영역 구분은 없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및 생존보험에 사망담보 특약을 가입한 경우이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1급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정홍주, 2005).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44건의 배우자 보험살인 기수사건이 적발되어 언론보도화 되었는데 이는 연간 2.4건에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전체 보험살인 범죄의 발생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정해보면 한국에서 연간 5건 내외의 보험살인 범죄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16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살인범죄의 연평균 발생건수는 919건이고 기수범죄는 364.7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수범죄 기준으로 보험살인 범죄와 전체 살인범죄를 비교하면, 연간 발생하는 살인사건 중 보험살인 범죄의 발생비율은 보수적으로 1.37%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보도(금융감독원, 2019)에 의하면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 적발인원은 79,179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8만여명의 국민이 보험사기 사건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적발내용 대부분이 경미한 보험사기 행위일지라도 이를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보험범죄는 그 속성 상 반복적으로 범죄행위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보험금 편취라는 보상이 따르므로 도박행위와 유사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보험범죄자는 완전범죄에 대한 망상에 이르게 되는 경향이 일부 보험살인 적발 사례에서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보험금 발생급부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금이

므로, 보험금 편취행위의 내성화가 심각해지면 단번에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는 보험살인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관찰된다(허영록, 2018).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의 특수성**

보험살인 범죄자는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가 많다. 보험가입 특성 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표 1은 한·일 보험살인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일 모두 보험살인 범죄의 주된 대상은 배우자로 나타났다. 이병희(200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적발된 보험살인 범죄 피해자 57명 중 배우자는 31명으로 54.4%에 해당하며, 일본의 경우 2차 대전 후부터 1986년까지 전체 보험살인 범죄 발생피해자 104명 중 배우자는 57명으로 54.8%로 나타났다. 나이가 전체피해자 중 배우자 살해 시 동반되어 나타나는 기타피해자가 대부분 자녀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살인 범죄 중 배우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는 최소 54%이상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는 통상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여성이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영, 박형민, 박현수, 조소연, 2008). 이에 반하여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는 남녀 가해자 비율에 차이가 없거나 여성범죄자가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 나타났다.

손지선과 이수정(2007)은 배우자 살해 중 부인살해와 남편살해는 다르게 설명되어진다고 설명한다. 부인살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남성의 성적독점욕이나 소유욕에 대한 논의가 많다. 즉 살해라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부인살해는 자신의 유전적 자손을 남기기 위한 부인의 성적 정절과 이에 따른 부성(paternality)이 불확실한 남편의 부인에 대한 통제욕구 등이 큰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표 2는 배우자 살해에서 판결문 상의 살인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편에 의한 부인살해의 경우 41.4%에 달하는 남편이 부인의 외도 때문에 부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20.7%로써 부인의 모욕에 격분한 경우로 나타났다. 세 번째가 17.2%로 부인의 결별요구에 격분한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살해의 경우는 가장 높은 비율이 남편의 모욕, 폭행에 격분한 경우가 37.9%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31.0%로써 부인 자신의 외도로 인한 남편살해로 나타났다. 세 번째가 남편의 지속적 학대로 인한 살인으로 13.8%로 나타났다.

표 1. 한·일 보험살인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구분 | 가해자 |    |    |    |    |    |    | 피해자 |    |    |    |    |    |  |
|----|-----|----|----|----|----|----|----|-----|----|----|----|----|----|--|
|    | 남성  | 여성 |    |    |    |    |    | 남성  | 여성 |    |    |    |    |  |
|    | 피해자 | 부인 | 자녀 | 부모 | 친척 | 형제 | 기타 | 남편  | 자녀 | 부모 | 친척 | 형제 | 기타 |  |
| 한국 | 건수  | 11 | 4  | 2  | 4  | 2  | 5  | 20  | 1  | 0  | 2  | 1  | 5  |  |
| 일본 | 피해자 | 부인 | 자녀 | 부모 | 애인 | 형제 | 기타 | 남편  | 자녀 | 부모 | 애인 | 형제 | 기타 |  |
|    | 건수  | 26 | 14 | 9  | 3  | 6  | 4  | 31  | 7  | 0  | 2  | 1  | 1  |  |

출처 : 이병희 (2001)

표 2. 배우자간 살해에서 살인동기

| 판결문 상<br>살인동기        | N(%)     |          |
|----------------------|----------|----------|
|                      | 부인살해     | 남편살해     |
| 피해자의 모욕,<br>폭행에 격분하여 | 6(20.7)  | 11(37.9) |
| 피해자의 결별요구에<br>격분하여   | 5(17.2)  | 0(0.0)   |
| 피해자의 외도              | 12(41.4) | 1(1.7)   |
| 가해자의 외도관련<br>내연살인    | 1(1.7)   | 0(0.0)   |
| 가해자의 외도 관련<br>배우자살인  | 0(0.0)   | 9(31.0)  |
| 금전 목적                | 1(3.4)   | 2(6.9)   |
| 피해자의 지속적 확대          | 0(0.0)   | 4(13.8)  |
| 빈곤/우울                | 0(0.0)   | 1(3.4)   |
| 기 타                  | 4(13.8)  | 1(3.4)   |
| 전 체                  | 29(100)  | 29(100)  |

출처 : 손지선, 이수정 (2007)

일반적인 살인범죄의 경우 공범수를 살펴보면, 단독범인 경우가 86~91%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살인범죄는 단독으로 범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은영 등, 2008). 공범 1명인 경우가 2~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범 2명(1~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 보험살인 범죄의 공범 비율은 남성범죄자는 36%로 나타났고, 여성범죄자는 52%로 나타났다(이병희, 2001). 보험살인 범죄자의 공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범행 위장 및 알리바이 등을 위해 공범과 함께 범행하는 특성 때문으로 설명된다.

살인 범죄자의 유형분류 연구

범죄자 유형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연구한 1950년대 펜실베이니아 대학 Wolfgang의 연구로부터 출발하였다. 살인범죄자의 성격 및 범행동기 등을 해석할 목적으로 다수의 범죄학자들은 살인범죄자의 사회적, 인구학적 지표나 유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Roberts, Zgoba, & Shahidullah, 2007). Pinizzotto와 Finkel(1990)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유사한 범죄를 범한 타 범죄자들에서 나타나는 성향과 유사한 성향이 드러나는 범죄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비교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고전적인 살인범죄 유형은 FBI에 의해 만들어 졌다. 범죄현장행동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체계적(Organised), 비체계적(Disorganised)살인범죄자 유형분류가 그것이다. 체계적인 유형은 조직적·체계적이고 사전 계획적인 범죄를 포함하며 이에선 성도착 범죄가 대표적이다. 비체계적 유형은 무질서하고 우연적이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범죄자 특성을 보인다(Kocsis, Cooksey, & Irwin, 2002).

발전된 살인범죄 연구는 영국 리버풀 대학 수사심리학 센터의 Salfati에 의해 개발된 모델을 기초로 활성화되고 있다(Salfati, 2001). 36개의 범죄현장 변인을 기초로 표현적 살인과 도구적 살인으로 살인범죄자를 분류하였다. 표현적 살인은 즉흥적인 분노에 의한 비계획적 살인이며, 도구적 살인은 금전목적 등에 의한 살인이다(Salfati, 2002). 수사심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경험적 접근방식의 FBI 기법에 반해, 다수의 사례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통하여 범인과 범죄행위에 객관적인 유형론을 제시하여 통계적 추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영오, 윤종성, 2012). 주로 다차원적도

법(Multidimensional Scale, MDS)에 의하여 범죄 행동을 분석한다(Canter, 2004).

###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분류 연구

보험범죄자의 특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Ganon과 Donegan(2006)은 보험범죄자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범죄와 유사한 무분별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과도한 도박, 면허정지 및 탈세, 과도한 음주 행동이 허위보험 청구와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위험행동에 대한 변인을 비교하여 유발 위험군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Derrig(2002)는 보험범죄와 관련하여 비대칭적인 정보, 특히 범죄행동을 주장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범위와 프로세스를 모델화하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기의 탐지 및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험범죄 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독살범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독극물에 의한 범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결국 초동수사를 철저히 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ouglas, Burgess, 그리고 Ressler(2013)는 범죄 분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험살인 범죄와 관련된 특징을 다루었다. 피해자는 보험금 또는 재산상속 목적으로 살해되는데, 이런 보험살인 유형에는 개인적 이익 살인 및 상업적 이익 살인이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적 이익 살인은 가족관계 등에서 발생하고, 상업적 이익

살인은 사업상 파트너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는 범죄현장을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는 특징 때문에 현장행동 보다는 보험가입 내용, 가해자 피해자의 재무상태, 외도 등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oberts(2011)는 보험살인 범죄자의 단계별 행동특성에 대해 스코어카드를 적용하여 위험 예측 및 범죄적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범죄행위 탐지를 위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위험 스코어카드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와 같은 지능형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행동특성 이외에 범행동기, 혼인과정, 보험가입과정 등 복합적인 요인을 맥락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프로파일링 기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간 한국에서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으로 적발되어 언론보도화 된 56건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 중 범행내용 확인이 완전하지 못하여 사례연구에 부적합한 5건을 제외하고 그림 1과 같이 기수 44건, 미수 7건, 합계 51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구체적 수집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Google, Naver, Daum의 연도별 뉴스검색 기능을 통하여 2000년부터 2017년 기간 중 「보험살인」, 「보험금, 살인」, 「남편, 보험금, 살인」, 「아내, 보험금, 살인」, 「배우자, 보험금, 살인」 등을 키워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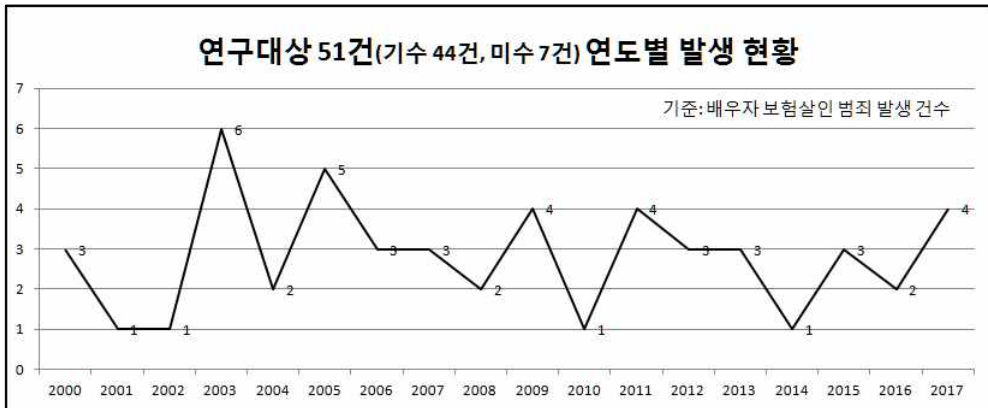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 51건 연도별 발생 현황

검색된 Google 14,000여건, Naver 8,000여건, Daum 7,500여건의 언론보도 내용 중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으로 적발된 사례를 발췌하였다. 한편, 연구일 현재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혐의로 적발된 사건 중 수사 중이거나 형사공판 진행 중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51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기초적 특성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수사기관의 공표된 보도자료, 공표된 법원의 판결문 및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금융감독원, 2010~2014)을 참고하였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사건 발생 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진 범죄이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관계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 시사프로 등에서 비교적 상세한 범죄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자료수집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카페, 흥미 위주의 방송프로 등의 정보는 연구신뢰성 확보를 위해 차단하였다.

본 연구는 공표된 자료만을 수집하였는데,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만

전을 기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에 따른 질적 성향의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사건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와 범행 변화추세 분석 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일지라도 연구목적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 자료의 코딩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 유형 분류는 국내·외에서 연구된 바가 없는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와 관련한 변인을 창출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인 선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행준비단계, 보험가입단계, 범행실행단계, 범행사후단계의 4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범행단계에서 관찰되는 특성을 추출하여 변인을 선정하였다.

첫째, 범행준비단계는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범행동기, 혼인관계, 외도여부, 궁핍상태, 피해자 특징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둘째, 보험가입단계는 사망보험금 편취목적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로 보험가입과 관련한 특이점, 가입건수, 가입금액, 가입시점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셋째, 범행실행단계는 사망보험금 편취목적 위해 배우자를 살해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는 단계로 범행방법, 위장방법, 범행장소, 공범관계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넷째, 범행사후단계는 배우자를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청구, 편취하는 단계로 적발시점, 자백여부, 보험금 편취내용, 주범과 공범의 양형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세부적인 변인 선정 방법으로는 추출 가능한 변인을 가능한 다량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이혼 진행 중인 여성이 내연남과 공모하여.....’ 라는 언론보도 내용이 관찰되면 ‘설계사경력’, ‘이혼진행중’, ‘내연관계공범’ 이라는 변인을 빠짐없이 창출하여 연구대상 51 사례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Microsoft사의 Excel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기본적 코딩 항목은 범인의 속성 항목으로서, 연령, 직업, 생활수준 등을 배치하였고, 범행특성과 관련한 코딩 항목은 범행단계별로 관찰된 특성 변인을 배치하였다. 종합적 자료분석 과정을 통하여 변인에 해당하는 행동이 관찰될 경우 ‘1’, 관찰

되지 않는 경우 ‘0’으로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이 배제된 가치중립적인 탐색과정을 거치기 위해 Yin(2017)에서 제시한 자료수집의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첫째,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하였으며, 둘째, 사례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셋째, 초기 연구문제부터 최종결과에 이르는 증거들이 연결되게끔 하였다.

본 연구의 변인들 중에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인과 세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인 간 일부 중복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동질성 분석의 목적은 둘 이상의 명목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포괄적 변인 및 세부적 변인을 각각 도표화하여 이에 대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3은 중복배치 변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도관련 변인의 경우 “외도”, “혼인전 외도”, “혼인후 외도”로 구분한 이유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유형 중 “외도” 여부가 관찰된 유형 지도를 먼저 포괄적으로 살펴본 후 외도행위의 세부내용인 “혼인전 외도”, “혼인후 외도”가 어떠한 유형에서 특수하게

표 3. 중복배치 변인 내용

| 포괄 변인 | 세부변인   | 내용             |
|-------|--------|----------------|
| 이혼력   | 이혼진행중  | 이혼 진행 중 범행     |
|       | 이혼2회이상 | 이혼 이력 2회 이상    |
| 외도    | 혼인전외도  | 혼인 전부터 외도관계 관찰 |
|       | 혼인후외도  | 혼인 후부터 외도관계 관찰 |
| 궁핍 상태 | 추락형궁핍  | 급작스런 경제적 추락    |
|       | 생계형궁핍  | 장기간 저소득 지속상태   |

산포되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로 적발되어 언론보도 된 51사례에서 나타나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을 정량화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사례연구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다. 특히 현상과 정황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Yin, 2017). 사례연구는 복잡하고 특수한 수집자료가 가진 맥락 속에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탐색, 묘사, 설명하여야 한다(Stake, 2000). 일반적으로 과학적 사실들은 다른 조건하에서 같은 현상들이 반복되어 실험되고 검증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반복실험의 접근논리를 사례연구에 적용시킨 것이 다중사례연구(multiple-case study)이다(Yin, 2017). 이를 위해 Yin(2017)이 제시한 사례연구 분석기법 중 패턴매칭(pattern matching)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변인을 추출하였다. 패턴매칭 분석기법은 경험적으로 관찰한 패턴과 사전에 예측하였던 패턴을 비교하는 논리적 분석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 수사기관 보도자료, 형사 판결문, 방송매체 등 출처와 내용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수집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개별사건과 동질된 사건집단간에서 발견되는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처럼 소수의 빈도로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에 패턴매칭 기법을 활용한 다중

사례 연구는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하겠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범행특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동질성 분석(homogeneity analysis; HOMALS)을 실시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에서 개발한 동질성 분석(HOMALS)프로그램 Version 1.0을 사용하였다. 동질성 분석은 다중 대응일치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 MCA) 이라고도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e, MDS)의 일종으로 범행특성을 변인화 하여 각 변인들이 동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다차원 공간속에 점으로 표시하고, 각 점들의 거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을 말한다(노형진, 2011). 범죄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각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연관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유형화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한 유형에 속하는 변인들은 범죄행동에 있어서 함께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한 유형에 속하는 변인들은 범죄 행동에 있어서 다른 유형에 속하는 변인들과 함께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유형화 연구에서는 유형별 동일집단 변인들의 특징이 일관성 있게 발생하는지와 타 유형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Canter, 2004). 각 변인들은 공간상에 점으로 위치하고 각 점들이 멀게 위치하면 각 변인은 유사성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치적 자료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전체적인 관계 구조를 공간상의 그림을 통해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장익진, 1998). 동질성 분석은 지역 가설(regional hypothesis)에 근거하는데, 지역 가설은 각 유형을 정의하는 특징들이 다차원의 공간상에서 구분되는 지역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Borg & Shye, 1995).

## 결 과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51명(2명은 초·재혼 배우자 2명을 연쇄살인 하여 각 사건을 1건(명)으로 산정)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범죄자가 25명(49.0%), 여성범죄자가 26명(51.0%)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0.2세, 여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4.0세이다. 전체 평균연령은 42.2세이며 성별에 따른 평균연령의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58, p=.121$ ). 30대~50대가 다빈도의 연령대로 나타났다, 40대가 43.1%, 30대가 27.5%, 50대가 19.6%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및 70세 이상 연령의 범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 모두 40대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강은영 등(2008)은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중 살인 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살인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살인범죄자 중 30대가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20대가 28.0%, 40대가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살인범죄자보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성별 구성비는 일반살인 범죄자와 차이가 크다. 강은영 등(2008)의 연구결과, 전체 살인 범죄자 중 남성범죄자에 의한 살인은 80.3%이고, 여성범죄자에 의한 살인은 19.7%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살인 범죄자의 경우 남성범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 파악된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는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의 발생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남성범죄자의 경우 무직이 8명(3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범죄자의 경우 가정주부가 15명(57.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형사판결문 등에 나타난 객관적 기록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구치소 또는 교

표 4.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연령

| 특성         | 구분                         | 전체 |       | 남성 범죄자 |       | 여성 범죄자 |       |
|------------|----------------------------|----|-------|--------|-------|--------|-------|
|            |                            | 명  | %     | 명      | %     | 명      | %     |
| 범행당시<br>연령 | 20대                        | 4  | 7.8   | 2      | 8.0   | 2      | 7.7   |
|            | 30대                        | 14 | 27.5  | 9      | 36.0  | 5      | 19.2  |
|            | 40대                        | 22 | 43.1  | 11     | 44.0  | 11     | 42.3  |
|            | 50대                        | 10 | 19.6  | 3      | 12.0  | 7      | 26.9  |
|            | 60대                        | 1  | 2.0   | 0      | 0     | 1      | 3.8   |
| 평균연령       | 42.2세( $t=-1.58, p=.121$ ) |    |       | 40.2세  |       | 44.0세  |       |
| 계          | 계                          | 51 | 100.0 | 25     | 100.0 | 26     | 100.0 |

표 5.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직업 특성

| 특성   | 구분    | 전체 |       | 남성 범죄자 |       | 여성 범죄자 |       |
|------|-------|----|-------|--------|-------|--------|-------|
|      |       | 명  | %     | 명      | %     | 명      | %     |
| 직업특성 | 가정주부  | 15 | 29.4  | 0      | 0.0   | 15     | 57.7  |
|      | 무직    | 9  | 17.6  | 8      | 32.0  | 1      | 3.8   |
|      | 자영업   | 7  | 13.7  | 4      | 16.0  | 3      | 11.5  |
|      | 보험설계사 | 7  | 13.7  | 2      | 8.0   | 5      | 19.2  |
|      | 일용직   | 3  | 5.9   | 2      | 8.0   | 1      | 3.8   |
|      | 의료직   | 3  | 5.9   | 2      | 8.0   | 1      | 3.8   |
|      | 사무직   | 2  | 3.9   | 2      | 8.0   | 0      | 0.0   |
|      | 기타    | 4  | 7.8   | 4      | 16.0  | 0      | 0.0   |
|      | 미상    | 1  | 2.0   | 1      | 4.0   | 0      | 0.0   |
| 계    | 계     | 51 | 100.0 | 25     | 100.0 | 26     | 100.0 |

도소에 복역 중 직업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정주부나 무직은 사실상의 직업과 다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연구대상자 51명 중 전·현직보험설계사가 7명(13.7%)으로 나타난 점인데, 보험관련 업무종사자가 보험관련 지식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단계별 특성변인 빈도 분석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동질성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찰되는 범행특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변인선별이 필요하다. 분석에 앞서 110개 변인들에 대해서 관찰빈도가 극히 낮은 변인과 극히 높은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빈도가 극히 낮은 변인들은 이혼 2회 이상(n=2, 3.9%), 피해자 이혼요구(n=2, 3.9%), 주범사형(n=2, 3.9%), 가족관계공범(n=1, 2.0%), 목격자(n=1, 2.0%), 공범사형(n=0)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도가 매우

높아 유형분류 의미가 없는 변인들은 단일살인(n=43, 84.3%), 자진정약(n=40, 78.4%)으로 나타났다. 동질성 분석의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변인과 매우 높은 변인을 제외하여야 하나, 빈도가 극히 낮거나 높더라도 변인간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빈약한 상태에서 탐색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가능한 많은 변인을 사용하여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와 관련된 특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목격자(n=1, 2.0%), 공범사형(n=0) 2개 변인을 제외한 108변인으로 탐색을 시도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판별측도(Discrimination measure)는 변인의 정보가 각 차원에서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2는 각 변인들에 대한 판별측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성사기이력, 약자물색 등은 1차원으로 설명되는 비율이 높고, 공범내용, 성별 등은 2차원으로 설명

표 6. 범행준비단계 33 변인 빈도분석

| 연번 | 변인명      | 빈도 | %    |
|----|----------|----|------|
| 1  | 외도동기     | 17 | 33.3 |
| 2  | 포식동기     | 16 | 31.4 |
| 3  | 빈곤동기     | 11 | 21.6 |
| 4  | 보복동기     | 3  | 5.9  |
| 5  | 미분류동기    | 4  | 7.8  |
| 6  | 이혼진행중    | 6  | 11.8 |
| 7  | 이혼력      | 15 | 29.4 |
| 8  | 이혼2회이상   | 2  | 3.9  |
| 9  | 재혼       | 13 | 25.5 |
| 10 | 외도       | 27 | 52.9 |
| 11 | 혼인전외도    | 4  | 7.8  |
| 12 | 혼인후외도    | 23 | 45.1 |
| 13 | 설계사경력    | 7  | 13.7 |
| 14 | 연성사기이력   | 10 | 19.6 |
| 15 | 피해자물색    | 15 | 29.4 |
| 16 | 약자물색     | 13 | 25.5 |
| 17 | 생활수준 상   | 3  | 5.9  |
| 18 | 생활수준 중   | 23 | 45.1 |
| 19 | 생활수준 하   | 25 | 49.0 |
| 20 | 궁핍상태     | 26 | 51.0 |
| 21 | 추락형궁핍    | 14 | 27.5 |
| 22 | 생계형궁핍    | 12 | 23.5 |
| 23 | 부채       | 19 | 37.3 |
| 24 | 유흥비      | 7  | 13.7 |
| 25 | 사업실패     | 7  | 13.7 |
| 26 | 저소득      | 9  | 17.6 |
| 27 | 도박       | 3  | 5.9  |
| 28 | 피해자 이혼력  | 7  | 13.7 |
| 29 | 피해자 외도   | 5  | 9.8  |
| 30 | 피해자 폭력   | 5  | 9.8  |
| 31 | 피해자 무능   | 7  | 13.7 |
| 32 | 피해자 이혼거부 | 5  | 9.8  |
| 33 | 피해자 이혼요구 | 2  | 3.9  |

표 7. 보험가입단계 18 변인 빈도분석

| 연번 | 변인명       | 빈도 | %    |
|----|-----------|----|------|
| 34 | 집중가입      | 25 | 49.0 |
| 35 | 혼인신고가입    | 13 | 25.5 |
| 36 | 자진청약      | 40 | 78.4 |
| 37 | 사망고액설계    | 15 | 29.4 |
| 38 | 수익자변경     | 2  | 3.9  |
| 39 | 가입 1건     | 13 | 25.5 |
| 40 | 가입 2건 이상  | 38 | 74.5 |
| 41 | 사망 1억 미만  | 4  | 7.8  |
| 42 | 사망 1억 이상  | 10 | 19.6 |
| 43 | 사망 3억 이상  | 13 | 25.5 |
| 44 | 사망 5억 이상  | 17 | 33.3 |
| 45 | 사망 10억 이상 | 7  | 13.7 |
| 46 | 범행 7일전 가입 | 3  | 5.9  |
| 47 | 범행 1월전 가입 | 7  | 13.7 |
| 48 | 범행 3월전 가입 | 4  | 7.8  |
| 49 | 범행 6월전 가입 | 6  | 11.8 |
| 50 | 범행 1년전 가입 | 10 | 19.6 |
| 51 | 유지 1년 이상  | 8  | 15.7 |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별측도는 각 차원별로 계산되며 각 차원에서 수량화된 변인의 분산과 같이 변인들이 차원별로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판별측도 수치가 클수록 변인들 간의 산포도가 크다는 것이며 범주들 간의 판별력이 높게 반영된다는 것이다(SPSS 12.0). 표 10은 주요 범행 변인 판별측도의 차원별 위치를 나타낸다. 유발동기의 판별측도는 1차원이 0.757, 2차원이 0.741로 대상 변인들을 설명하는 판별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은 유발동기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분류, 명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범행실행단계 36 변인 빈도분석

| 연번 | 변인명    | 빈도 | %    |
|----|--------|----|------|
| 52 | 교통사고   | 10 | 19.6 |
| 53 | 외력     | 10 | 19.6 |
| 54 | 불상     | 3  | 5.9  |
| 55 | 독극물    | 11 | 21.6 |
| 56 | 목조름    | 12 | 23.5 |
| 57 | 방화     | 5  | 9.8  |
| 58 | 뺑소니위장  | 12 | 23.5 |
| 59 | 교통사고위장 | 9  | 17.6 |
| 60 | 사고사위장  | 11 | 21.6 |
| 61 | 화재위장   | 8  | 15.7 |
| 62 | 돌연사위장  | 8  | 15.7 |
| 63 | 자살위장   | 3  | 5.9  |
| 64 | 건물내부   | 22 | 43.1 |
| 65 | 노상     | 14 | 27.5 |
| 66 | 차량내부   | 5  | 9.8  |
| 67 | 유원지등   | 8  | 15.7 |
| 68 | 불상장소   | 2  | 3.9  |
| 69 | 심야범행   | 23 | 45.1 |
| 70 | 야간범행   | 13 | 25.5 |
| 71 | 주간범행   | 4  | 7.8  |
| 72 | 휴일범행   | 21 | 41.2 |
| 73 | 단일살인   | 43 | 84.3 |
| 74 | 연속살인   | 4  | 7.8  |
| 75 | 연쇄살인   | 4  | 7.8  |
| 76 | 기타피해자  | 6  | 11.8 |
| 77 | 목적자    | 1  | 2.0  |
| 78 | 미수이력   | 11 | 21.6 |
| 79 | 주범범행   | 25 | 49.0 |
| 80 | 공범범행   | 26 | 51.0 |
| 81 | 단독범    | 22 | 43.1 |
| 82 | 공범1명   | 16 | 31.4 |
| 83 | 공범2명   | 10 | 19.6 |
| 84 | 공범3명이상 | 3  | 5.9  |
| 85 | 내연관계공범 | 19 | 37.3 |
| 86 | 금전목적공범 | 9  | 17.6 |
| 87 | 가족관계공범 | 1  | 2.0  |

표 9. 범행사후단계 23 변인 빈도분석

| 연번  | 변인명     | 빈도 | %    |
|-----|---------|----|------|
| 88  | 초동적발    | 27 | 52.9 |
| 89  | 재수사적발   | 24 | 47.1 |
| 90  | 주범자백    | 12 | 23.5 |
| 91  | 공범자백    | 14 | 27.5 |
| 92  | 직접증거적발  | 23 | 45.1 |
| 93  | 간접증거적발  | 28 | 54.9 |
| 94  | 편취실패    | 29 | 56.9 |
| 95  | 일부편취    | 11 | 21.6 |
| 96  | 전부편취    | 11 | 21.6 |
| 97  | 편취1억미만  | 9  | 17.6 |
| 98  | 편취1억이상  | 6  | 11.8 |
| 99  | 편취3억이상  | 4  | 7.8  |
| 100 | 편취5억이상  | 3  | 5.9  |
| 101 | 주범사형    | 2  | 3.9  |
| 102 | 주범무기    | 14 | 27.5 |
| 103 | 주범22년   | 8  | 15.7 |
| 104 | 주범15년   | 7  | 13.7 |
| 105 | 주범15년미만 | 3  | 5.9  |
| 106 | 공범사형    | 0  | 0    |
| 107 | 공범무기    | 6  | 11.8 |
| 108 | 공범22년   | 4  | 7.8  |
| 109 | 공범15년   | 4  | 7.8  |
| 110 | 공범15년미만 | 3  | 5.9  |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분류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에 적합한 유형 모델을 분류하기 위해 108개 범행변인을 토대로 동질성 분석(HOMAL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차원 모형에서 34회 반복계산을 수행한 후 최종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고유값은 차원 1에서 0.295, 차원 2에서 0.207로 설명되었다. 고유값은 차원별로 설명되는 가중치가 부여된 분산의 양을 설명하며, 이론 상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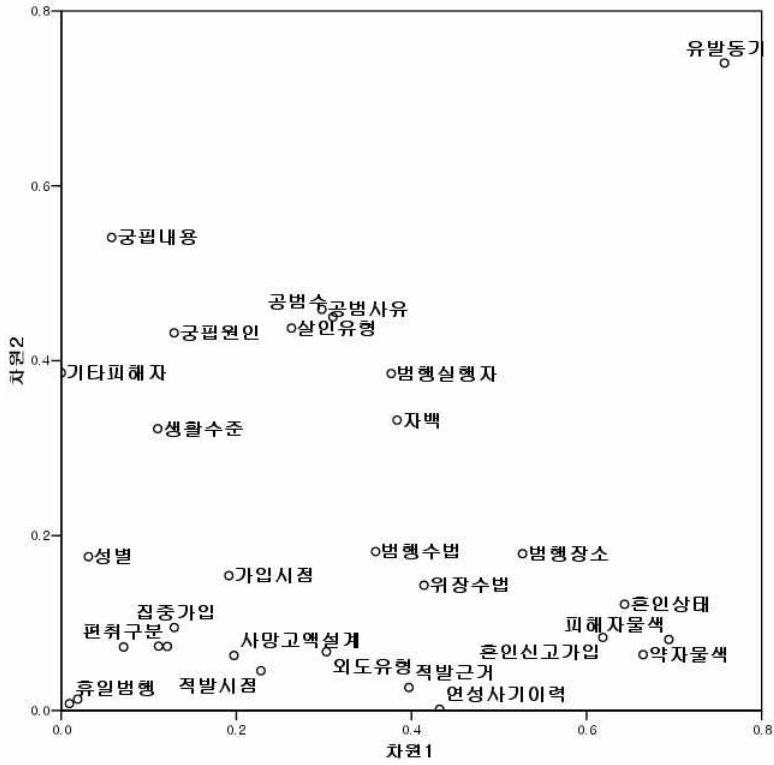


그림 2. 범행변인 판별측도

표 10. 주요 범행변인 판별측도의 차원별 위치

| 변인     | 차원   |      | 변인    | 차원   |      | 변인   | 차원   |      |
|--------|------|------|-------|------|------|------|------|------|
|        | 1    | 2    |       | 1    | 2    |      | 1    | 2    |
| 유발동기   | .757 | .741 | 가입건수  | .071 | .073 | 공범사유 | .298 | .459 |
| 혼인상태   | .643 | .122 | 보험금규모 | .111 | .074 | 적발시점 | .228 | .046 |
| 외도유형   | .303 | .067 | 범행수법  | .359 | .182 | 적발근거 | .397 | .026 |
| 연성사기이력 | .432 | .001 | 위장수법  | .414 | .143 | 자백   | .384 | .332 |
| 피해자물색  | .694 | .081 | 범행장소  | .527 | .179 | 편취구분 | .121 | .073 |
| 생활수준   | .110 | .322 | 휴일범행  | .009 | .008 | 성별   | .031 | .176 |
| 공범내용   | .058 | .541 | 살인유형  | .263 | .437 | 금전동기 | .019 | .013 |
| 공범원인   | .129 | .432 | 기타피해자 | .000 | .386 | 약자물색 | .665 | .064 |
| 혼인신고가입 | .619 | .084 | 범행실행자 | .377 | .385 | 집중가입 | .129 | .095 |
| 사망고액설계 | .197 | .063 | 공범수   | .310 | .450 | 가입시점 | .192 | .154 |





다. 2사분면 영역에 속한 변인들은 포식동기, 혼인신고가입, 재혼배우자, 피해자물색, 연성사기이력 등으로 산포되어 있으며, 4사분면 영역에 속한 변인들은 빈곤동기, 연속살인, 기타피해자, 생계형공핍 등으로 산포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인들을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하고자 한다. 1사분면 영역의 범죄자 유형은 외도 및 공범관계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됨으로 외도형(Affair type)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사분면 영역의 범죄자 유형은 혼인신고가입 및 피해자물색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됨으로 포식형(Predator type)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사분면 영역의 범죄자 유형은 빈곤동기 및 생계형공핍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됨으로 빈곤형(Poverty type)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과 표 11은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

의 유형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외도형, 포식형, 빈곤형의 3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보복동기 3사례는 동기적 측면에서는 세 가지 유형과 다르게 분류하여야 하나, 범행특성 패턴이 외도형과 유사한 영역에 산포되어 나타났으므로 외도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외도형의 하위유형으로 보복형 3사례가 포함됨을 밝혀둔다. 외도형과 보복형 모두 피해자의 무능, 폭력이 다수 사례에서 관찰됨으로 두 유형이 동질적 위치에 산포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도형과 보복형은 외도대상의 존부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배우자에 대한 보복이나 못마땅함이 기저에 형성되어 있는 유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구대상 51 사례 중 3가지 범죄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동기가 불분명한 4사례가 파악되었다.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미분류 유형으로 명명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질성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범주 수량화와

표 11. 영역(region)별 변인 특성 분류표

| 영역                | 1사분면  | 2사분면   | 4사분면  |
|-------------------|---|--|---|
| 범죄자 유형            | Affair type<br>외도형(보복형 3명포함)  | Predator type<br>포식형   | Poverty type<br>빈곤형   |
| 유발동기              | 외도, 보복  | 포식   | 빈곤  |
| 명, 점유율            | 20명, 39.2%  | 16명, 31.4%   | 11명, 21.6%  |
| 영역별<br>범행특성<br>변인 | 외도동기, 보복동기, 공범자백, 공범2명, 공범범행, 내연관계공범, 혼인후외도, 이혼배우자, 이혼중배우자, 뺑소니위장, 중류, 공핍상태없음, 여성, 공범1명, 공범3명이상, 단일살인 | 포식동기, 혼인신고가입, 재혼배우자, 혼인전외도, 피해자물색, 유원지 등, 보혐금재산, 연성사기이력, 사업실패, 추락형공핍 | 빈곤동기, 연속살인, 기타피해자, 생계형공핍, 저소득, 1월전가입, 사망1억이상, 주범자백, 가입1건, 초혼배우자, 차량내부, 하류, 남성, 자살위장 |

이 수량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상점수이다. 대상점수란 특정 차원의 대상(사례)에 할당된 최적 점수이다(SPSS 12.0).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를 시계열로 분석하기 위해 발생일 기준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림 4는 설명기준이 사건번호인 대상점수를 나타낸 것인데, 1번 사건이 가장먼저 발생한 사건이며, 번호가 높을수록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설명기준이 사건번호인 대상점수를 살펴보면 발생

시기별 범행유형의 변화 추세를 판단할 수 있다. 1사분면 영역인 외도형에 속한 사건번호들의 평균값은 19.0이며, 2사분면 영역인 포식형에 속한 사건번호들의 평균 값은 29.7로 나타났다. 외도형은 비교적 오래전 발생한 범죄 유형임을 나타내는데 반하여, 포식형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범죄유형임을 알 수 있다.

유형분류 적정성 검증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 분류는 국내·외에서 연구된 바가 없는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변인을 창출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인 선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변인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인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2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혼인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외도형과 빈곤형은 초혼상태인 범죄자가 대부분이고, 포식형은 재혼상태인 범죄자가 대부분이다. 유형별 집단 간 혼인상태 차이 확인을 위해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한 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9.341, p<.001$ ).

표 13은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궁핍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외도형 20명 중 13명(65.0%)이 궁핍상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식형은 16명 중 10명(62.5%)이 궁핍상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형은 11명 모두에서 궁핍상태가 관찰되었다. 추락형 궁핍은 주로 외도형, 포식형에서 관찰되고, 생계형 궁핍은 주로 빈곤형에서 관찰되었다. 유형별 집단 간 궁핍상태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4.781, p<.001$ ).

표 14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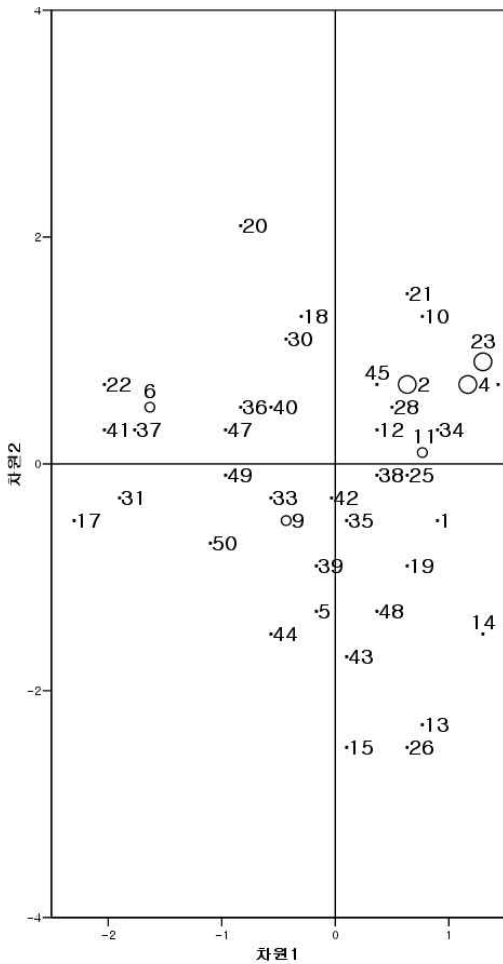


그림 4. 설명기준이 사건번호인 대상점수

표 12.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혼인상태 교차분석

|        | 전체          | 외도형          | 포식형          | 빈곤형          | 미분류         | $\chi^2$ or $F$ |
|--------|-------------|--------------|--------------|--------------|-------------|-----------------|
| 초혼배우자  | 30<br>(100) | 15<br>(50.0) | 3<br>(10.0)  | 10<br>(33.3) | 2<br>(6.7)  | 39.341***       |
| 이혼중배우자 | 6<br>(100)  | 4<br>(66.7)  | 0<br>(0)     | 1<br>(16.7)  | 1<br>(16.7) |                 |
| 이혼배우자  | 2<br>(100)  | 1<br>(50.0)  | 0<br>(0)     | 0<br>(0)     | 1<br>(50.0) |                 |
| 재혼배우자  | 13<br>(100) | 0<br>(0)     | 13<br>(100)  | 0<br>(0)     | 0<br>(0)    |                 |
| 전체     | 51<br>(100) | 20<br>(39.2) | 16<br>(31.4) | 11<br>(21.6) | 4<br>(7.8)  |                 |

\*\*\*  $p < .001$

표 13.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궁핍상태 교차분석

|          | 전체          | 외도형          | 포식형          | 빈곤형          | 미분류         | $\chi^2$ or $F$ |
|----------|-------------|--------------|--------------|--------------|-------------|-----------------|
| 추락형궁핍    | 14<br>(100) | 6<br>(42.9)  | 5<br>(35.7)  | 3<br>(21.4)  | 0<br>(0)    | 24.781***       |
| 생계형궁핍    | 12<br>(100) | 1<br>(8.3)   | 1<br>(8.3)   | 8<br>(66.7)  | 2<br>(16.7) |                 |
| 궁핍 상태 없음 | 25<br>(100) | 13<br>(52.0) | 10<br>(40.0) | 0<br>(0)     | 2<br>(8.0)  |                 |
| 전체       | 51<br>(100) | 20<br>(39.2) | 16<br>(31.4) | 11<br>(21.6) | 4<br>(7.8)  |                 |

\*\*\*  $p < .001$

위장수법을 나타내고 있다. 뺑소니위장이 12명(2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사위장 11명(21.6%), 교통사고위장 9명(17.6%), 화재위장 8명(15.7%), 돌연사위장 8명(15.7%), 자살위장 3명(5.9%)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수법에 대한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외도형 범죄자는 뺑소니위장 10명(83.8%)이 가장 많았으며, 포

식형 범죄자는 사고사위장 6명(54.4%)이 가장 많았고, 빈곤형 범죄자는 화재위장 3명(37.5%), 돌연사위장 3명(37.5%)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집단 간 위장수법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7.679, p=.002$ ).

표 15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범행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건물내부가 22명

표 14.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위장수법 교차분석

|         | 전체          | 외도형          | 포식형          | 빈곤형          | 미분류         | $\chi^2$ or $F$ |
|---------|-------------|--------------|--------------|--------------|-------------|-----------------|
| 뺑소니 위장  | 12<br>(100) | 10<br>(83.8) | 0<br>(0)     | 2<br>(16.7)  | 0<br>(0)    | 27.679**        |
| 사고사 위장  | 11<br>(100) | 2<br>(18.2)  | 6<br>(54.5)  | 2<br>(18.2)  | 1<br>(9.1)  |                 |
| 교통사고 위장 | 9<br>(100)  | 4<br>(44.4)  | 2<br>(22.2)  | 0<br>(0)     | 3<br>(33.3) |                 |
| 화재 위장   | 8<br>(100)  | 3<br>(37.5)  | 2<br>(25.0)  | 3<br>(37.5)  | 0<br>(0)    |                 |
| 돌연사 위장  | 8<br>(100)  | 1<br>(12.5)  | 4<br>(50.0)  | 3<br>(37.5)  | 0<br>(0)    |                 |
| 자살 위장   | 3<br>(100)  | 0<br>(0)     | 2<br>(66.7)  | 1<br>(33.3)  | 0<br>(0)    |                 |
| 전체      | 51<br>(100) | 20<br>(39.2) | 16<br>(31.4) | 11<br>(21.6) | 4<br>(7.8)  |                 |

\*\*  $p < .005$

표 15.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범행장소 교차분석

|       | 전체          | 외도형          | 포식형          | 빈곤형          | 미분류         | $\chi^2$ or $F$ |
|-------|-------------|--------------|--------------|--------------|-------------|-----------------|
| 건물내부  | 22<br>(100) | 4<br>(18.2)  | 10<br>(45.5) | 8<br>(36.4)  | 0<br>(0)    | 39.891***       |
| 노상    | 14<br>(100) | 12<br>(85.7) | 0<br>(0)     | 2<br>(14.3)  | 0<br>(0)    |                 |
| 유원지 등 | 8<br>(100)  | 0<br>(0)     | 6<br>(75.0)  | 0<br>(0)     | 2<br>(25.0) |                 |
| 차량내부  | 5<br>(100)  | 2<br>(40.0)  | 0<br>(0)     | 1<br>(20.0)  | 2<br>(40.0) |                 |
| 불상장소  | 2<br>(100)  | 2<br>(100)   | 0<br>(0)     | 0<br>(0)     | 0<br>(0)    |                 |
| 전체    | 51<br>(100) | 20<br>(39.2) | 16<br>(31.4) | 11<br>(21.6) | 4<br>(7.8)  |                 |

\*\*\*  $p < .001$

(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상 14명(27.5%), 유원지 등 8명(15.7%), 차량내부 5명(9.8%), 불상장소 2명(3.9%)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장소에 대한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외도형 범피자는 노상 12명(85.7%)이 가장 많았으며, 포식형 범피자는 건물내부 10명(45.5%)이 가장 많았고, 빈곤형 범피자는 건물내부 8명(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도형 범피자는 내연관계 공범과 함께 범행하는 특성이 있는데, 주범인 여성범피자가 남편을 노상으로 유인한 상태에서 내연관계 공범이 차대인 교통사고나 외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수법이 관찰되었다. 포식형 범피자는 건물내부에서 주로 독극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원지 등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인 것처럼 위장하여 살해하는 특성도 관찰되었다. 빈곤형 범피자는 건물내부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목조름과 독극물을 사용하여 살해 후 화재나 돌연사로 위장

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유형별 집단 간 범행장소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9.891, p=.001$ ).

표 16은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공범수를 나타내고 있다. 공범과 함께 범행한 경우는 29명(56.9%)이고 단독범은 22명(43.1%)으로 나타났다. 공범수에 대한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외도형 범피자는 공범1명이 9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범2명 7명(70.0%) 순으로 나타났다. 포식형 범피자는 단독범이 9명(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범1명 5명(31.3%)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형 범피자는 단독범이 9명(40.9%)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집단 간 공범수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0.331, p=.005$ ).

표 17은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범행실행자를 나타내고 있다. 범행실행자는 주범이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가 25명(49.0%)이고 공범이 살해한 경우가 26명(51.0%)으로 나타났다. 범행실행자에 대한 유형별 점유율을

표 16.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공범수 교차분석

|        | 전체          | 외도형          | 포식형          | 빈곤형          | 미분류         | $\chi^2$ or $F$ |
|--------|-------------|--------------|--------------|--------------|-------------|-----------------|
| 단독범    | 22<br>(100) | 2<br>(9.1)   | 9<br>(40.9)  | 9<br>(40.9)  | 2<br>(9.1)  |                 |
| 공범1명   | 16<br>(100) | 9<br>(56.3)  | 5<br>(31.3)  | 1<br>(6.3)   | 1<br>(6.3)  |                 |
| 공범2명   | 10<br>(100) | 7<br>(70.0)  | 2<br>(20.0)  | 0<br>(0)     | 1<br>(10.0) | 20.331**        |
| 공범3명이상 | 3<br>(100)  | 2<br>(66.7)  | 0<br>(0)     | 1<br>(33.3)  | 0<br>(0)    |                 |
| 전체     | 51<br>(100) | 20<br>(39.2) | 16<br>(31.4) | 11<br>(21.6) | 4<br>(7.8)  |                 |

\*\*  $p < .005$

표 17.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범행실행자 교차분석

|      | 전체          | 외도형          | 포식형          | 빈곤형          | 미분류        | $\chi^2$ or $F$ |
|------|-------------|--------------|--------------|--------------|------------|-----------------|
| 주범범행 | 25<br>(100) | 2<br>(8.0)   | 11<br>(44.0) | 10<br>(40.0) | 2<br>(8.0) | 23.677***       |
| 공범범행 | 26<br>(100) | 18<br>(69.2) | 5<br>(19.2)  | 1<br>(3.8)   | 2<br>(7.7) |                 |
| 전체   | 51<br>(100) | 20<br>(39.2) | 16<br>(31.4) | 11<br>(21.6) | 4<br>(7.8) |                 |

\*\*\*  $p < .001$

살펴보면, 외도형 범죄자는 공범범행 18명(69.2%), 주범범행 2명(8.0%)으로 나타났다. 포식형 범죄자는 주범범행 11명(44.0%), 공범범행 5명(19.2%)으로 나타났다. 빈곤형 범죄자는 주범범행 10명(40.0%), 공범범행 1명(3.8%)으로 나타났다. 외도형 범죄자는 공범이 직접 범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포식형 범죄자는 공범과 함께 범행하되 공범은 알리바이 등 보조적 역할을 하고 범행실행은 주범이 직접 범행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빈곤형 범죄자는 주범이 직접 범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형별 집단 간 범행실행

자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3.677, p=.001$ ).

표 18은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자백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자백이 관찰된 경우가 26명(51.0%)이고, 자백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가 25명(49.0%)으로 나타났다. 주범자백(주범만 자백한 경우)이 12명(23.5%)으로 파악되었으며, 공범자백이 14명(27.5%)으로 나타났다. 자백여부에 대한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외도형 범죄자는 주범자백 2명(16.7%), 공범자백 12명(85.7%), 자백없음 6명(24.0%)으로 나타났다. 포식형 범죄자는 주범자백 3명(25.0%),

표 18.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자백여부 교차분석

|                  | 전체          | 외도형          | 포식형          | 빈곤형          | 미분류         | $\chi^2$ or $F$ |
|------------------|-------------|--------------|--------------|--------------|-------------|-----------------|
| 주범자백<br>(주범단독자백) | 12<br>(100) | 2<br>(16.7)  | 3<br>(25.0)  | 4<br>(33.3)  | 3<br>(25.0) | 20.652***       |
| 공범자백             | 14<br>(100) | 12<br>(85.7) | 2<br>(14.3)  | 0<br>(0)     | 0<br>(0)    |                 |
| 자백 없음            | 25<br>(100) | 6<br>(24.0)  | 11<br>(44.0) | 7<br>(28.0)  | 1<br>(4.0)  |                 |
| 전체               | 51<br>(100) | 20<br>(39.2) | 16<br>(31.4) | 11<br>(21.6) | 4<br>(7.8)  |                 |

\*\*\*  $p < .001$

공범자백 2명(14.3%), 자백없음 11명(44.0%)으로 나타났다. 빈곤형 범죄자는 주범자백 4명(33.3%), 공범자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자백없음 7명(28.0%)으로 나타났다. 외도형 범죄자 20명 중 14명(70.0%)에서 자백이 관찰되었는데, 주로 공범이 먼저 자백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식형 범죄자는 자백률이 가장 낮아 자백없음이 전체 16명 중 11명(68.8%)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 집단 간 자백여부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0.652, p=.001$ ).

####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별 프로파일

표 19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별 프로파일이다. 본 연구는 Yin(2017)이 제시한 사례 연구 분석기법 중 패턴매칭(pattern matching)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는데 사전에 예측하였던 범행패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하여 치정 동기에 의한 범행이 많을 것이다. 둘째, 빈곤탈피 목적의 범행이 증가 하였을 것이다. 셋째, 위장혼인을 통한 보험살인 범죄가 증가 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였던 패턴과 경험적으로 관찰한 패턴을 비교한 바, 첫째, 셋째 예측 패턴은 일치하였으나, 빈곤탈피 목적의 범행이 증가 하였을 것이라는 예측 패턴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도형 범죄자는 연구대상자 51명 중 20명으로 39.2%(남성 30.0%, 여성 70.0%)의 점유율로 3가지 유형 중 가장 다빈도로 발생한 유형이며 여성성향의 범죄유형이다. 이들은 주로 현 배우자 이외의 자와 외도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범행하는 유형이며, 보복동기 유형 3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범행특성으로는 공범

이 둔기 등으로 가격 후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행 적발에 있어서는 공범의 자백에 의한 적발이 많았다.

포식형 범죄자는 연구대상자 51명 중 16명으로 31.4%(남성 56.3%, 여성 43.7%)의 점유율로 나타났으며 성별 성향차이가 거의 없는 범죄유형이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대상자를 물색하여 위장혼인을 하는 특성이 타 유형과 다른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연성보험사기 경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물색 후 혼인신고와 동시에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의 범행은 범행수법이 치밀하여 타 유형에 비해 초동수사 적발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빈곤형 범죄자는 연구대상자 51명 중 11명으로 21.6%(남성 63.6%, 여성 36.4%)의 점유율로 나타났으며 남성성향의 범죄유형이다. 주로 저소득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궁핍상태를 탈피하고자 범행하는 유형으로 단독범에 의한 범행이 많았다. 타 유형에 비해 보험가입 후 단기간 내에 범행하는 특성을 보이며, 일부 사례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연속살해하는 특성이 관찰된다. 빈곤형 범죄자는 범행수법이 타 유형에 비해 허술하여 초동수사 적발률이 3가지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별 추세분석

그림 5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유형 추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유형 추세 그래프를 살펴보면 포식형 유형은 증가하고 외도형 유형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0년대 전반기에는 3건 발생하였던 포식형 유형의 범죄는 2000년대 후반기에는 6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대 전중반기에

표 19.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별 프로파일

| 프로파일     |            |             |                   |             |
|----------|------------|-------------|-------------------|-------------|
| 범행 단계    | 유형         | 외도형         | 포식형               | 빈곤형         |
|          | 성별접유율      | 남성 30.0%    | 남성 56.3%          | 남성 63.6%    |
|          |            | 여성 70.0%    | 여성 43.7%          | 여성 36.4%    |
| 범행 준비 단계 | 유발동기       | 외도유지, 보복    | 피해자 포식            | 빈곤상태 탈피     |
|          | 범행대상       | 초혼, 이혼중배우자  | 사회적 약자, 재산 있는 이혼자 | 초혼배우자       |
|          | 가해자 대비 피해자 | 남성피해자 +1.4세 | 남성피해자 +3.2세       | 남성피해자 +1.0세 |
|          | 평균연령       | 여성피해자 -3.2세 | 여성피해자 -7.9세       | 여성피해자 -3.7세 |
|          | 외도여부       | 혼인 후 외도     | 혼인 전 외도           | 혼인 후 외도(소수) |
|          | 연성보험사기     | -           | 다수 관찰             | -           |
|          | 피해자물색      | -           | 대다수               | -           |
|          | 생활수준       | 중류          | 상류, 중류            | 하류          |
| 보험 가입 단계 | 공범종류       | 추락형 공범      | 추락형 공범            | 생계형 공범      |
|          | 집중가입       | 다수          | 대다수               | 소수          |
|          | 혼인신고가입     | 없음          | 대다수               | 없음          |
|          | 고액설계       | 소수          | 다수                | 극소수         |
| 범행 실행 단계 | 가입시점       | 1년전가입 다수    | 혼인신고전후            | 1월전가입 다수    |
|          | 가입금액평균     | 4억7,615만원   | 4억6,406만원         | 4억455만원     |
|          | 범행수법       | 교통사고, 외력    | 독극물, 불상           | 독극물, 목조름    |
|          | 위장수법       | 뺑소니 위장      | 사고사 위장            | 화재, 돌연사 위장  |
| 범행 사후 단계 | 범행장소       | 노상          | 건물내부, 유원지         | 건물내부        |
|          | 살인유형       | 단일살인        | 단일, 연쇄살인          | 단일, 연속살인    |
|          | 범행주체       | 공범          | 주범                | 주범          |
|          | 공범         | 대다수         | 소수                | 극소수         |
| 범행 사후 단계 | 공범관계       | 내연관계        | 내연, 금전목적          | 금전목적        |
|          | 적발시점       | 초동수사, 채수사   | 채수사               | 초동수사        |
|          | 자백여부       | 공범자백        | 자백없음              | 주범자백        |
|          | 적발근거       | 직접증거        | 간접증거              | 간접, 직접증거    |
|          | 편취금액(평균)   | 1억475만원     | 1억5,363만원         | 2,545만원     |
|          | 주범양형(다빈도)  | 징역15년이상     | 무기징역              | 무기징역        |
|          | 공범양형(다빈도)  | 무기징역        | 징역15년미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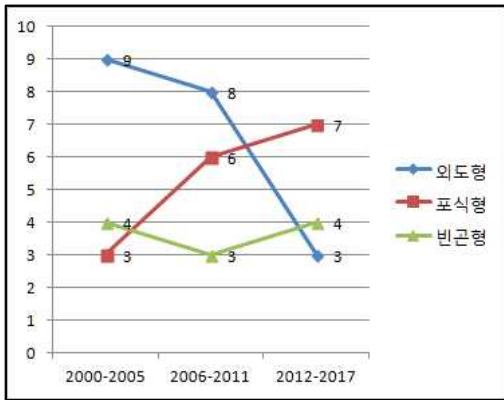


그림 5.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유형 추세 그래프

는 7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의도형 유형은 2000년대 전반기에는 9건 발생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기에는 8건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대 전중반기에는 3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 후반부터 폐지가 논의되던 간통죄가 2015.02.26. 폐지됨에 따라 의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도덕적 압박감이 완화된 것이 의도형 유형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형 유형은 2000년대 전반기에는 4건 발생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기에는 3건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대 전중반기에는 4건 발생하여 연구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추세가 관찰되지 않았다.

## 논 의

연구결과 제기된 주요 쟁점은 첫째, 포식형 범죄자 유형을 배우자간 보험살인 범죄유형에 포함 시킨 것, 둘째,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만을 반영하고,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심리검사는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첫 번째 논의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위장혼인

관계를 맺은 후 범행하는 포식형 범죄자 유형을 배우자간 살인범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일본의 경우는 보험금을 노린 위장혼인 범죄자를 배우자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타인의 범죄로 보는 의견이 있다(渡橋健, 2009). 그러나 한국의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금을 노린 위장혼인이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1년여 이상 혼인상태를 지속한 후 범행하는 특성이 관찰되므로 배우자간 범죄와 달리 구분할 사유가 없었다. 정상적 혼인관계 지속 중 발생하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와 사전에 피해자를 물색하여 위장혼인관계를 맺은 후 범행하는 유형 모두 법적인 혼인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배우자간 보험살인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의 형성시기에 있어서 양자는 명확하게 구분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범의 형성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변인을 추가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논의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심리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자료, 형사판결문 등에서 나타나는 다빈도의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특성변인을 추출하여 각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비교한 다중사례연구(multiple-case study)이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범죄자의 심리검사 결과 없이 객관적인 사실위주의 수집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이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연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나 심리측정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분류에 관한 국내·외 최초의 탐색

적 연구이므로, 심리측정 결과를 반영하기보다는 수집자료에서 관찰된 객관적 사실에 의한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초연구가 빈약한 상태에서는 우선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후속연구자의 연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반구조화된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심리측정 결과를 반영한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노출된 한계점은 수집자료의 한계에서 오는 일부 특성변인의 미비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수집자료 중 보험가입단계의 일부변인인 보험가입 건수, 보험가입 회사 수, 월납보험료 합계액은 70%정도의 내용과약에 그쳤다. 이러한 원인 등으로 인하여 3가지의 유형 중 외도형에 포함되어 있는 보복동기 유형은 별도의 유형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보험가입 세부내역과 관련한 변인들을 확보 후 반복검증 연구를 수행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쟁점 및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을 외도형, 포식형, 빈곤형으로 특징적으로 분류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 대한 합의와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예방을 위한 시사점으로 범죄자 유형 중 증가추세가 관찰된 포식형 범죄자에 대한 위협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세밀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포식형 범죄자는 사회적 약자를 사냥하듯이 물색하여 위장혼인관계를 맺은 후 피보험자인 배

우자를 살해하는 특성을 보인다. Beauregard, Rossmo & Proulx(2007)는 성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냥하듯이 피해자를 선택하고 접근하는 방법 등이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 중 포식형 범죄자의 범행수법과 매우 흡사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식형 범죄자의 범행수법은 3가지의 유형 중 가장 치밀하여 암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유형으로 관찰되었다. 포식형 범죄자의 초동수사 적발률은 25.0%로 대부분 재수사를 통해 적발되었으며, 자백률도 3가지 유형 중 가장 낮아 자백 없음이 전체 16명 중 11명(68.8%)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적발근거도 대부분 간접증거에 의한 것으로 관찰되는 바, 형사법정에서 과학적인 간접증거 확보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심리학 및 행동과학 분야 민간전문가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윤민우, 이수정, 최혜림, 2011).

본 연구에서 관찰된 포식형 유형의 피해자 특징을 살펴보면, 가해자보다 현저하게 어린 나이, 지적장애자, 국제결혼한 동남아 여성, 무연고 고아, 가출한 미혼모 등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자력구체능력이 부족한 약자였음이 관찰되었다. 사회적 약자인 범죄 취약계층에게 위협성을 인지시키고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피보험자 보호 측면에서 보험계약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실효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보험제도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발생하고 있고, 나이가 포식형 유형이 증가 추세에 있음이 밝혀진 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보험제도를 견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은영, 박형민, 박현수, 조소연 (200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 금융감독원 (2010).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2010. 12. 서울: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2012).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2012. 12. 서울: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2013).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2013. 12. 서울: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2014).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2014. 12. 서울: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2019).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8천억원, 신고포상금 24억원.
- 김경옥, 이수정 (2005).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31-149.
- 김경옥, 이수정 (2009). 범죄현장 행동에 근거한 방화범죄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131-146.
- 김영오, 윤종성 (2012). 범죄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51(2), 189-224
- 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보건복지부.
- 노형진 (2011). SPSS를 활용한 분할표의 분석 및 대응분석. 서울: 학현사
- 박지선. (2010). 성적 살인에서의 범죄현장 행동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법, 1(1), 1-20.
- 박지선, 최낙범. (2013). 문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법, 4(3), 107-124.
- 손지선, 이수정 (2007).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1-17.
- 송윤아 (2011).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 예방 방안. KiRi Weekly 2011.8. 16., 10-12
- 윤광균 (2012).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살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인권과 정의: 427호, 6-23
- 윤민우, 이수정, 최혜림 (2011).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의 심리학 및 행동과학 분야 민간전문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37-153.
- 이병희 (2001). 保險金目的 殺人犯罪의 實態. 형사정책연구, 53-76.
- 이수정 (2018). 최신범죄심리학(제 4판). 서울: 학지사
- 임준태 (2004). 강력범죄에서의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 (Criminal Profiling) 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1-38.
- 장익진 (1998). 다차원 척도 분석법. 서울: 연암사.
- 장인권 (2010). 보험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홍주 (2005). 한국의 위험과 보험이야기. 서울: 문영사
- 허경미 (2008).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경

- 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허영록 (2018).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 수사심리학회지, 4, 29-42  
허영록 (2018).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KBS (2016. 5. 6). 13년만에 들끓던 남편 청부 살해극.  
渡橋健 (2009). 近年の刑事裁判例にみる保険金殺人の動向とモラル・リスク対策. 保険學雜誌, 2009(605), 605\_161-605\_179.  
越智啓太, & 木戸麻由美. (2011). 大量殺傷犯人の屬性と犯行パターン (1) 日本における大量殺傷事件の類型.  
Adjin-Tettey, E. (2014). Protecting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within the insurance regime: Opportunities to seek termination or variation of insurance contracts. *Can. J. Fam. L.*, 29, 211.  
Beauregard, E., Rossmo, D. K., & Proulx, J. (2007). A descriptive model of the hunting process of serial sex offenders: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6), 449-463.  
Black, H. C. (1990). *Black's law dictionary*. St. Paul, MN: WestPublishing.  
Borg, I., & Shye, S. (1995). Facet theory. Form and content, Vol. 5. *Advanced quantitative technique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Thousand Oaks, CA/London/New Delhi: SAGE.  
Canter, D. (2004). Offender profiling and investigative psych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 1-15.  
Chriscoe, J. C. (2016). Murder for Life Insurance Money: Protecting the Children. *S. Tex. L. Rev.*, 58, 173.  
Dalko, V. (2017). Unsafe insurance. *Journal of Financial Crime*, (just-accepted), 00-00.  
Derrig, R. A. (2002). Insurance fraud.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9(3), 271-287.  
Douglas, J., Burgess, A. W., Burgess, A. G., & Ressler, R. K. (2013). *Crime classification manual: A standard system for investigating and classifying violent crime*. John Wiley & Sons.  
Ganon, M. W., & Donegan, J. J. (2006). Self-control and insurance fraud. *Journal of Economic Crime Management*, 4(1), 1-24.  
Havenga, P. (2006). Murder for insurance: policy pays out. *Fundamina: A Journal of Legal History*, 12(2), 51-70.  
Kocsis, R. N., Cooksey, R. W., & Irwin, H. J. (2002). Psychological profiling of offender characteristics from crime behaviors in serial rape off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2), 144-169.  
Pinizzotto, A. J., & Finkel, N. J. (1990).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Law and Human Behavior*, 14(3), 215-233.  
Roberts, A. R., Zgoba, K. M., & Shahidullah, S. M. (2007). Recidivism among four types of homicide offenders: An exploratory analysis of 336 homicide offenders in New Jerse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5), 493-507.  
Roberts, T. (2011). The use of credit scorecard design, predictive modelling and text mining to detect fraud in the insurance industry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

- University).
- Salfati, C. G. (2001). The Nature of Expressiveness and Instrumentality in Homicide and its Implication of Offender Profiling. Paper Presented at the 6th Investigating Psychology Conference, Liverpool, England.
- Salfati, C. G. & Grey, J. (2002). Profiling U.S. Homicid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November, Chicago.
- Stake, R. E. (2000). Qualitative Case Studies. In D. a. Lincoln (Ed.),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443-466): Sage.
- Yin, R. K. (2017).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 1차원고접수 : 2019. 04. 08.  
2차원고접수 : 2019. 06. 17.  
3차원고접수 : 2019. 08. 08.  
최종게재결정 : 2019. 09. 14.

## A study to Classify Spouse Insurance Homicide Offenses

Young Rok Her

Soo Jung Lee

Criminologic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e murder crime scene related to spousal insurance is often mistaken for casual accident death, so it is easier to look at it as a natural death scene rather than a murder crime. As the spousal insurance related murder is a planned and long-term crime unlike other murd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tection plan for the victim by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tive and crime stages rather than the crime scen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ed to classified the types of homicide offende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motive and crime stage in the case of spousal insurance homic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ype that is suitable for Korean murder criminals related to spousal insurance. Secondly, it is to analyze trends of characteristics of crimes and types of criminal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homogeneity analysis(HOMALS) on 108 characteristic variables after we'd collected media reports, investigative agency press releases and criminal judgment sentences of 51 cases accused of homicide criminals related to spousal insurance in Korea from 2000 to 2017. As a result, Korean homicide criminals related to spousal insurance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ir motive and crime stage characteristics: affair, predator, and poverty. In the affair type, the crime mainly was disguised as a hit-and-run traffic accident and both of them having an affair were related to the crime. The predator type offender mainly disguised the crime as an accident after the offender'd poisoned the victim. The victim was selected for the marriage and insurance application as the victim was socially weak. The offender from the poverty type mainly killed both the spouse and children after frustrated from the financial difficulties for daily living. Among the crime types, the predator type increased while the affair type decreased.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risk of predator type increasing for the prevention of crime related to the spouse insurance. The perpetrator searches for the victim like hunting and kills the victim for the insurance death benefits and property after fake marriage. Based on these finding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predators were suggested.

*Keywords: spouse insurance homicide offenses, criminal profiling, type classification, homogeneity analysis(HOMALS)*